

군포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신금자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15,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mik337@korea.kr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군포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포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신금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발의연월일 : 2020. 10. .

발 의 자 : 신금자, 성복임, 장경민,
이건행, 홍경호, 이길호,
이희재, 김귀근, 이우천

1. 제안이유

- 군포시의 전통무예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보존·발전시킴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도전, 존중, 배려, 수양 등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3조)
- 나. 전통무예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다. 전통무예를 진흥키 위한 사업추진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마.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바. 포상에 관한 규정(안 제8조)

3. 관련법규

- 관계법령 : 전통무예 진흥법

군포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군포시의 전통무예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켜 주민의 건강 증진과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무예활동”이란 전통무예단체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전통무예진흥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의 수립·시행
2. 군포시민의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조직·예산의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3조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

본계획에 따라 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
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4.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5. 전통무예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6.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에 소재지를 두고 전통무예를 계승·발전·보급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면서 전통무예 관련 공연 및 교육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전통무예 단체를 지도·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경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전통무예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의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또는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키거나 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등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포상)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법인·단체 등에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